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24564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하

담당변호사 조근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원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2. 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22,519,726원 및 그 중 322,519,279원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B는 72,312,966원 및 그 중 72,312,897원에 대하여 2020. 6. 29.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231,6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55,231,6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의 나항, 제3항 및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519,838원 및 그 중 322,519,279원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2. 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41,395,62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41,395,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증금액 360,000,000원(이후 32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5. 12. 28.(이후 2020. 12. 24.로 변경)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는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8. 피고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액 90,000,000원(이후 71,4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5. 4. 27.(이후 2020. 10. 23.로 변경)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신용보증약정 제10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연 8%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E은 2020. 2. 10.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20. 2. 7.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4. 3. E에 324,562,53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2,043,256원을 회수하였다.

2) E은 2020. 3. 11. 원고에게 피고 B가 2020. 3. 3.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6. 29. E에 72,630,57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317,680원을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1) 피고 B는 2019. 12. 20. 피고 C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피고 B는 2020. 1. 28.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2. 3.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및 채권양도양수계약

1)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20. 1. 29. 계약금 19,000,000원을, 2020. 2. 3. 잔금 중 일부인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 B, C, D는 2020. 2. 3.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 41,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 D가 이에 동의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 C은 2020. 2.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2020. 2. 26. 피고 C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다 제3, 4호증, 을라 제2

,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청구

앞서 본 제1의 가, 나항의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 B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 대위변제금 322,519,279원(= 대위변제금 324,562,535원 - 상환금 2,043,256원)과 상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47원(= 2,043,256원 × 8% × 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¹⁾ 합계 322,519,726원 및 그 중 미상환 대위변제금 322,519,27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4. 3.부터 2020.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0. 12. 8.까지는 제1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는 원고의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나 피고 B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결과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 적용시기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청구

앞서 본 제1의 가, 나항의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상환 대위변제금 72,312,897원(= 대위변제금 72,630,577원 - 상환금 317,680원)과 상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9원(= 317,680원 × 8% × 1일/365일) 합계 72,312,966원 및 그 중 미상환 대위변제금 72,312,89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6. 29.부터 2020.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0. 12. 8.까지는 제2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각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제1의 다, 라항의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각 처분의 상대방과 목적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그 일련의 법률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 D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12. 20.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 28.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제2항 기재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위 각 계약 체결일 전에 제1, 2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피고 회사와 피고 B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② 피고 회사가 2020. 2. 7.경, 피고 B가 2020. 3. 3.경 각 E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그 무렵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채무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원고가 2020. 4. 3.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6. 29.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 외에도 E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19,000,000원, 담보대출채무 115,135,228원, 보증채무 148,748,000원, F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00,000,000원을 각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 시가 212,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각 계약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D에게 매도한 각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 B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위 각 행위로 재산이 감소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C은 2019. 4. 3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피고 B에게 합계 76,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다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가 2019. 4. 30. 34,000,000원을, 2019. 7. 29. 25,000,000원을, 2019. 9. 18. 17,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과 피고 B가 2019. 9. 30. 7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각 작성된 사실, 피고 C이 자기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9. 4. 25. 6,000,000원을, 2019. 4. 26. 3,000,000원을, 2019. 7. 18. 15,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2019. 7. 24. 10,000,000원을 다른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는데, 그 이체내역에 'B전액'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영수증과 차용증에 차용금의 변제기 및 이자의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피고 C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피고 C이 자기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2019. 7. 24.자 이체의 경우도 이체 상대방 계좌번호가 피고 B가 사용하는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인출 및 이체한 금액과 시기가 위 각 영수증의 작성 시기 및 영수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③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았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 C이 그 주장과 같이 최초 대여한 2019. 4. 30.자 대여금 34,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계속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C이 주장하는 대여관계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B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 C, 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D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D는 거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올라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속초 G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등록하였고[아파트매물인터넷게시물(올라 제1호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의 등록시기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2019. 12. 9.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D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2020. 1. 28.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190,000,000원으로, 그 무렵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비추어 다소 저렴하기는 하나 적정한 거래금액을 벗어나 염가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9,000,000원을, 2020. 2. 3. 잔금 중 일부인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채권을 양수한 피고 C에게 2020. 2. 26. 4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3) 피고 B, D는 2020. 2. 26. 공인중개사 H에게 중개수수료로 각 88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그 밖의 특수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일 만에 잔금을 지급하는 등 통상의 매매계약에 비해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의 간격이 짧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피고 D와 피고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D가 피고 B의 채권, 채무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입주 준비를 위해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20.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7) 앞서 본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마.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다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더불어 수익자를 상대로 수익자가 부당하게 보유한 변제이익 상당액을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등기 자체의 말소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고, 가액배상에 의한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나아가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매매 잔금채권 41,000,000원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D로부터 2020. 2. 26. 위와 같이 양수받은 41,000,000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2020. 2. 3. 피고 D가 피고 B에게 매매 잔금으로 지급한 돈 중 14,231,673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돈 합계 55,231,673원(= 41,000,000원 + 14,231,673원) 상당의 변제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이 부당하게 보유한 위 변제이익 상당액은 가액배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55,231,6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5,231,6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 B,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같은 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강영기, 판사 이창현

목 록

1.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속초시 I, J에 있는 K건물 L동

[도로명주소] 속초시 M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N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990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속초시 I 대 12664.1㎡

2. 속초시 J 대 343.4㎡

대지권 종류 : 1,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3007.5분의 49.4989

2. 채권

피고 B와 피고 D가 2020. 1. 28.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가 피고 D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잔금채권 중 4,100만원. 끝.

1)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연 8%라고 하면서 이 부분 상환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55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